

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
번호 2198

제출년월일 : 2011. 11. 15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개정이유

- 셋째 이상 다자녀 교복비를 중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근거 마련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친출산 분위기 확산

주요내용

- 가. 다자녀 가정의 교복비 확대 지원 (안 제3조).
- 나. 다자녀 가정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지원(부칙)

개정조례안 : 불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불임

예산수반사항

- 셋째아 이상 교복비 지원 : 90,000천원
- 300명 × 300,000원 = 90,000,000원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1. 10. 14. ~11. 4(21일간).
-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현행조례(전문)

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 를 “뜻은 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고등학생” 을 “중학생 및 고등학생” 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범위 안” 을 “범위” 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금조치” 를 “제3항에 따라 지급” 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범위 내” 를 “범위” 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고등학교” 를 “중학교 및 고등학교” 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학자금 등” 을 “학자금” 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에 따른 교복비 지원은 2012. 1. 1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감면기준 및 감면율(%)란 중 “「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100%” 를 “「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%” 로 한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가족여성과장 박 광 욱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출산정책담당 이 선 희
	담 당 자 성명·전화	박 수 미 (행정 2604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다자녀 교복비” (이하 “교복비”라 한다)란 다자녀 가정의 <u>고등학생</u>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복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.</p> <p>제5조(장려금 지원금액) 장려금은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원 이하로 한다.</p> <p>제7조(장려금 지원방법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입금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, 우편,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.</p> <p>제9조(양육비 지원금액) 양육비는 예산의 <u>범위</u>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1인당 월 5만원 이하로 한다.</p> <p>제14조(교복비) ① 교복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<u>고등학교</u>에 입학하는 자에게 지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7조(학자금 지원방법) ① 시장은 <u>학자금</u> 등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<u>중학생 및 고등학생</u> ----- -----</p> <p>제5조(장려금 지원금액)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</p> <p>제7조(장려금 지원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제3항에 따라 지급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9조(양육비 지원금액)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</p> <p>제14조(교복비) ① ----- ----- ----- <u>중학교 및 고등학교</u>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학자금 지원방법) ① ----- <u>학자금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